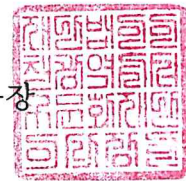


##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용역 계약 해지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재)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이사장



1. 공고명 : 「Play Me, 누구나 피아노 공연 운영 계약」 용역계약 해지 통지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나. 「행정절차법」 제15조(공시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 가. 성명(법인명) : 루나빌리지 박수완 대표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99, 지하1층(석남동, 금정빌딩)
- 다. 계약 명 : Play Me, 누구나 피아노 공연 운영 계약
- 라. 계약체결일 : 2025년 6월 5일

4. 공고 내용

계약 상대방에게 용역계약 해지 통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갈음합니다.

5.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귀사와 우리 재단 간 체결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① 귀사는 위 계약에 따른 공연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우리 재단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총 3회에 걸쳐 계약이행 촉구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 ③ 또한, 용역계약 해지 사전 안내에 대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총 3회에 걸쳐 발송하고, 공시송달을 재단 및 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2026.4.14.부터 2026.4.29.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귀사로부터 계약 이행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회신이나 이행 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⑤ 이에 따라 귀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6. 처분 내용

위 사실에 따라 우리 재단은 귀사와 체결한 「Play Me, 누구나 피아노 공연 운영 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7. 처분의 법적 근거

본 처분은 다음 법령 및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계약의 해제·해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해당 계약서 「과업지시서」 2. 과업수행 일반지침, 라. 계약의 해지 등

8. 공고기간 : 2026. 5. 13. ~ 2026. 5. 28. (15일간)

## 9.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본 처분은 본 통지의 도달일에 발생하며,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기간 만료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10.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

본 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계약 이행분에 대한 정산
-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금액 확정 후 선금 반환 청구
- 기타 계약 관련 법적 조치(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

## 11. 불복 절차 안내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계약 관련 분쟁은 별도로 민사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 12. 기타 문의 사항

- 기 관 명 : (재)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서구문화회관)
- 전자우편 : [hjw@iscf.kr](mailto:hjw@iscf.kr)
- 전 화 : 032-510-6038

본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처분의 통지입니다.